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읍·면·리·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47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8. 23.
제출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○ 행정리 신설(공동주택 입주)

읍·면	행정리	공동주택명(세대수)	지 번	입주 예정
화원읍	명곡8리	화원동화아이위시(568) 화원동화아이위시오피스텔(105)	명곡리 230-8	'24. 10.

2. 주요내용

○ 리·반 조정 : 1리 증(333리 → 334리), 19반 증(2,871반 → 2,890반)(안 별표 2~3)

구분	읍·면	기존			개정			증감		이장 정수	비고
		행정리	반	세대수 (인구수)	행정리	반	세대수 (인구수)	리	반		
신설	화원읍	-	-	-	명곡8리 (화원동화아이위시)	19	673	1	19	1	'24.10. 입주

3. 조례안 : 붙임 참조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4. 7. 24. ~ 8. 15.) 결과 : 의견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읍·면·리·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읍·면·리·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화원읍 명곡리란 및 화원읍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읍 면	법정리명	이장 정수	행정리명
화원읍	명곡리	8	명곡1리 명곡2리 명곡3리 명곡4리 명곡5리 명곡6리 명곡7리 명곡8리
화원읍 소계	6	51	51

별표 3 중 화원읍 명곡7리란 다음에 명곡8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읍 면	리	반	구 역
화원읍	명곡8리	제 1 반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1동) 401~1901호, 2101~3901호
		2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1동) 402~1902호, 2102~3902호
		3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1동) 403~1903호, 2103~3803호
		4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1동) 405~1905호, 2105~3805호

읍 면	리	반	구 역
		5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2동) 401~1901호, 2101~4101호
		6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2동) 402~1902호, 2102~4102호
		7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2동) 403~1903호, 2103~4003호
		8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2동) 405~1905호, 2105~4005호
		9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3동) 401~1901호, 2101~4001호
		10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3동) 402~1902호, 2102~4002호
		11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3동) 403~1903호, 2103~4003호
		12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3동) 405~1905호, 2105~4005호
		13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5동) 401~1901호, 2101~3901호
		14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5동) 402~1902호, 2102~3902호
		15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5동) 403~1903호, 2103~3903호
		16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105동) 405~1905호, 2105~3905호
		17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301동) 401~1901호, 2101~3901호
		18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301동) 402~1902호, 2102~3902호
		19	230-8(화원동화아이위시 301동) 403~1903호, 2103~3903호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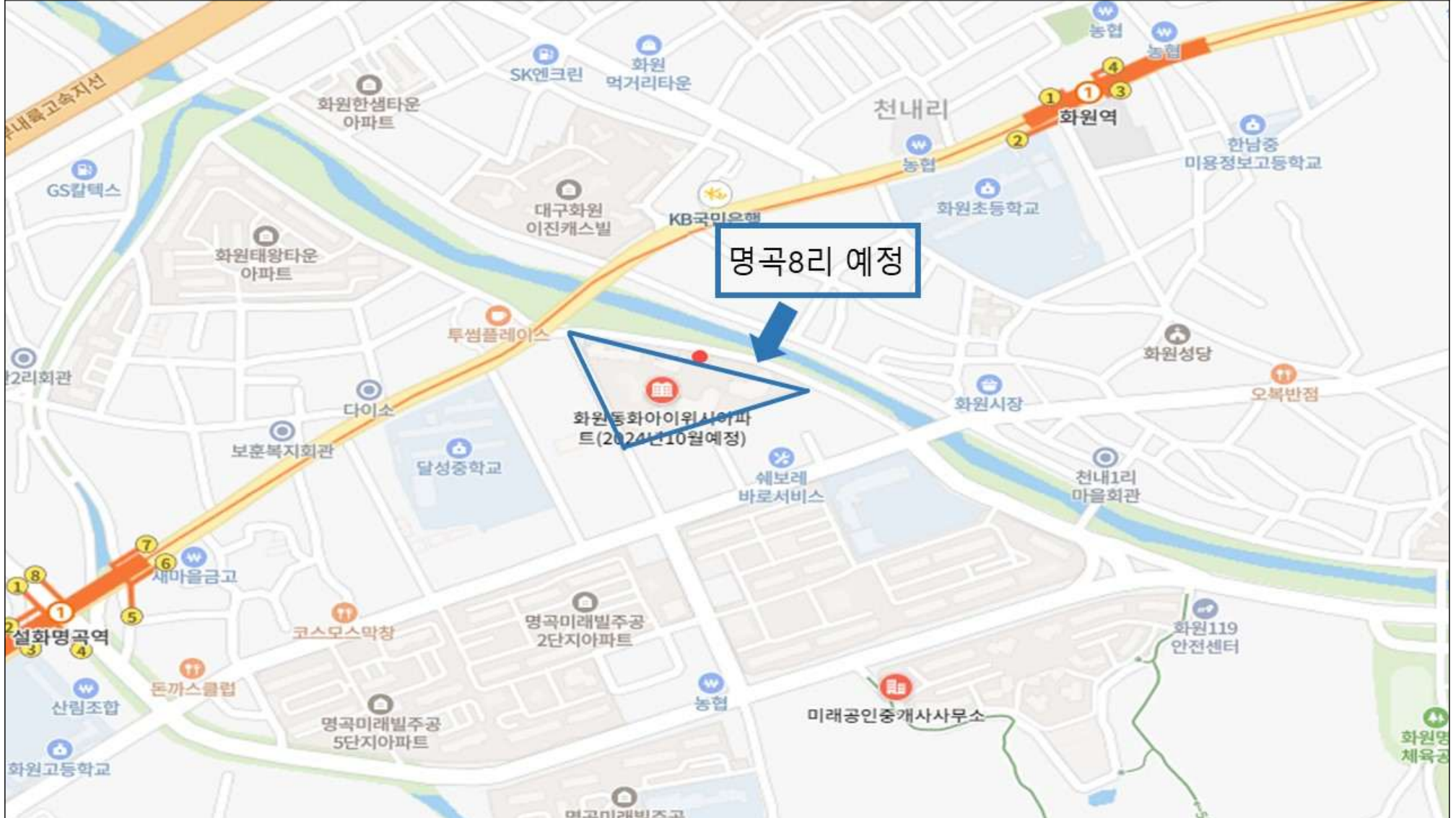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

행정구역 조정 지역 위치도

행정리 신설

명곡8리

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읍·면·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)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“행정동·리“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